

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(안) 검토보고서

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(안) 검토보고 (정형진의원 대표발의)

2014. 11. 21

전문위원 임 선 악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안자 : 정형진의원 대표발의외 8명의원(의안번호제40호)
- 나. 제안일자 : 2014. 11. 13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11. 19.

2. 제안이유

갑작스런 심정지환자 발생시 최초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제도적인 기반 마련 및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.
- 나. 심폐소생술 교육의 구청장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.
- 다. 심폐소생술 구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.
- 라.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- 사.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집행부와 협의

다. 입법예고 : 2014. 11. 13 ~ 2014. 11. 19 이의신청 없음

5. 검토의견

- ◆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(목적)부터 제10조(시행규칙)까지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,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구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가족 등 필요한 구민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, 심폐소생술 교육관련 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됨

【관계법령】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)①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,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
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의료종사자의 양성, 응급이송수단의 확보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정지원)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 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(自動除細動器)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하는 시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